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04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서영석・이기헌・소병훈

이해식 • 문진석 • 윤종군

전진숙 · 최기상 · 박홍배

김재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(이하 "복제약"이라 한다)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(이하 "오리지널"이라 한다)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.

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됨. 그 사례로, 실제 복제약을 생산·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·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·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,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.

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

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 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·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 여비용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된 이력이 있는 약제보다 높은 요양 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
- 1.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된 이력이 있는 약제와 투여경로·성분·함량·제형이 동일한 약제일 것
- 2.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의 원인이 된 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제조·수입하 는 약제일 것

제41조의2제1항 중 "「약사법」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"을 "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약사법」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
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. 다만,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로만 한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1조(요양급여) ①・② (생	제41조(요양급여) ①・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요양급여의 방법・절차・범	③		
위·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			
지부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			
<u>설&gt;</u>	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		
	충족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		
	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결정하는		
	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		
	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		
	액이 감액된 이력이 있는 약제		
	보다 높은 요양급여비용 상한		
	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		
	<u>1.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</u>		
	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		
	액된 이력이 있는 약제와 투		
	여경로 • 성분 • 함량 • 제형이		
	동일한 약제일 것		
	2.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		
	액의 원인이 된 「독점규제		
	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		
	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		
	위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		

④ (생략)

제41조의2(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약사법」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(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	불공	·정기	] 래 행우	위와	관팀	<u></u> 트이	없
	는 >	사가	제조ㆍ	· 수약	일하	는 인	<b>투제</b>
	일 /	것					
			가 같음	·)			
제			· -- 뱍제에		<u> </u>	오양글	<sup>7</sup> 여
•			· - - - -				
			_ · ·	, ,	•		
				<u>니</u>	百	4	오
	<u>중 어</u>	느	하나에	해딩	<b>강하</b>	느	
	<b>1</b> 「	ob x	1. 배	7 <u>리</u> 1	クス・	게으초	L 61
	1.	<u> </u>	<u> </u>	<u>^1 4</u>	122	<u>^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3 크
	<u>위</u> 반	과	관련된	경우	<u> </u>		
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. 다만,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로만 한정한다.